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(박완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88

발의연월일: 2021. 6. 8.

발 의 자: 박완수 · 박형수 · 조경태

김용판・이명수・서범수

최형두 • 권영세 • 이 용

이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(공휴일)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서 규율하고 있음.

하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,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,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(휴식 권)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한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으로,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

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3조).

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공휴일)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
- 1. 일요일
- 2. 3·1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
- 3. 1월 1일
- 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음력 1월 1일, 음력 1월 2일)
- 5. 부처님오신날(음력 4월 8일)
- 6. 어린이날(5월 5일)
- 7. 현충일(6월 6일)
- 8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음력 8월 15일, 음력 8월 16일)
- 9. 12월 25일(기독탄신일)
- 10.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11. 그 밖에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날
- 제3조(대체공휴일) ① 제2조제2호, 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공휴일이

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2호, 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
②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